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5.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년 4월 18일

나. 발 의 자 : 김길자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4월 25일

라. 상정일자 : 제17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3년 4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대상과 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2)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3)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1990. 1.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5.5%로 전국 취업자 비율 60.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근로능력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고용확대와 직업재활 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와 자립기회 제공 등 모두가 함께하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과와 일자리추진단의 유기적인 업무체제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기회 확대와 직업재활 훈련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길자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7 |
|----------|-----|

발의연월일 : 2013년 4월 일

발 의 자 : 김길자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대상과 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과 고용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안제9조)

3. 제 정 안 : “별 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2013. 4. 8 ~ 4. 15)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구의 책무)

- ①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추진 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구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 까지 높이도록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